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6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9. 01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9. 0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9. 13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의 일부개정(시행 2023. 6. 28.)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나이에서 ‘만’ 용어 삭제

-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(만 나이 통일법)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‘만’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법」 제158조,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: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8792(2023. 7. 25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172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7. 10. ~ 2023. 7. 31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(年數)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「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」 등 14건의 조례에 대해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,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원안가결